

## 아동보호와 관련된 신고

시의회의 아동안전행동강령(*Child Safe Code of Conduct*) 및 아동청소년보호정책(*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Policy*)에 의거하여, 아동보호와 관련된 모든 우려사항은 해당 업무 지역의 고위 책임자에게 1 차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. 먼저, 민원신고양식(*Complaints and Allegations Record Form*)을 작성해야 하고,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문화담당(*People and Culture team*)과 해당 상위 책임자가 신고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.

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웹사이트 [ChildStory Reporter Community](#) 페이지에는 신고의무자안내서(*Mandatory Reporter Guide*)가 있습니다. 이 안내서는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만약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, 온라인 또는 아동보호헬프라인(132 111)을 통해 아동보호 신고서를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아동이나 청소년이 현재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경찰(000)에 연락해야 합니다.

또한, 우려 사항이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혐의일 경우에는, 혐의 내용이 7 일 이내에 Office of the Children's Guardian 에 신고를 요하는 '신고 대상 행위(*Reportable Conduct Scheme*)'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, 조사를 받은 후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모든 시의회 직원은 시의회의 징계 절차를 받게 될 것이며,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(000)에 신고됩니다.